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준]

목 차

1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1
2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2
3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25
4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5	거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8
6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56
7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8
8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7
9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0
10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99
11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1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8. 22.

나. 발 의 자 :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8. 22.

2. 제안이유

- 기후환경 변화의 선제적 대응과 폭염·한파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예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폭염·한파 취약계층 및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사항

(안 제8조~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안전총괄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8. 18. ~ 2025. 08.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이변 발생에 따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해 종합대책 수립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폭염과 한파는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되어 있음. 제4조제1항에는 재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및제7호에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은 폭염대책과 한파대책을 마련토록 되어 있어 제4조의 종합대책 수립과 제5조 예방활동, 제6조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제7조 재난도우미 운영, 제8조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9조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제10조 협력 체계 구축 등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폭염·한파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됨

거창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나. 관련 조문: 군수의 책무 및 폭염·한파 대응 지원(안 제6조 ~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지원금액이 탄력적이며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고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
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
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

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2025. 1. 7.>

1. ~ 5. (생략)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

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7. 3. 21.>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8. 22.

나. 발 의 자 : 최준규 의원 대표발의

(최준규,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8. 22.

2. 제안이유

- 건물의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 옥상에 설치한 비가림시설이 현재의 규정으로는 건축허가 대상이나, 이를 모른 채 설치한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에서 군민을 구제하고 양성화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 가.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함 (안 제26조제2항제6호 신설)
- 나. 어린이집 및 공동주택 부지 내에 설치한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함 (안 제26조제2항제7호 신설)

다.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로 감면함 (안 제42조의3제4항 신설)(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20조제3항, 제80조제1항제2호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 제115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도시건축과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3층이하(3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을 받은 경우로 한정) 건축물에 누수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과 어린이집 부지와 공동주택 부지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 건축물로 개정함으로써 건축신고를 간소화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법건축물 양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기존 무허가 비가림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로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무허가 비가림시설에 대한 합법적인 건축물 추진을 유도하고 건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 **이행강제금 부과 예시**

○ 시가표준액(산출)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 지수(%)			×	경과연수 잔가율	×	면적 (㎡)	×	증축 (기초공사)	×	가감산 특례
130,000 × 면적	=	840,000	×	경량철골구조 65	단독주택 91	150초과 -200 96	×	2015년 0.55	×	없음	×	-15	×	무벽 -40

○ 산출식

구분	산출식	이행강제금	비고
위반사항 (예시)	위 치: 거창읍 상림리 121-20번지 위반내용: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위반면적: 100㎡ 구 조: 경량철골구조 설치년도: 2015년(사용승인일로부터10년) 시가표준액: 130,000원		
현행법	130,000원 × 100㎡ × 0.5 × 0.6 × 1/2	1,950,000원	≒ 15배
의원 발의안	130,000원 × 100㎡ × 0.01	130,000원	

○ 개정안을 보면 제26조 제2항 제6호와 제7호의 신설을 통해 비가림 시설을 가설 건축물에 포함시켰으며 제42조의3 4항에서 비가림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00분의1로 부과하도록 특례를 두어 감면하고 있음.

○ 제26조 제2항 제6호의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서 사용승인후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가중평균 수평면이 1.8m

이하인 경사지붕 또는 높이가 1.5m 이하인 평지붕,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 외벽이 없는 경량 구조물, 처마 빗물받이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빗물받이 시설 포함을 규정하면서 각목을 모두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건물 노후로 인해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방수작업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아 지붕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 현행법상 건축물의 증축에는 정식 허가와 함께 구조안전검사, 설계비 등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여 대부분 위법하게 설치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임.
- 또한 불법건축물의 경우 대출, 매매, 상가 인허가 등 다양한 법적·행정적 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이 위협받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복되는 유사 민원을 고려해, 미관 및 안전을 해치지 않는 소규모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고 충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개정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 수준으로 감경해주는 조치를 시행 중으로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로 추인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창구 개설 등을 통한 대책이 요구됨.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3소위12-주02호

민원표시 2CA-2309-0131956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부과 이의

신 청 인 A

피신청인 경상남도 합천군수

의 결 일 2024. 4. 22.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남 합천군 (이하 생략) 소재 주택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용 경량철골 지붕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바닥면적 중 실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바닥면적에 대하여는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위반건축물 항목의 제13호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115조의2제2항 관련)

1 ~ 12. (생략)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 (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의 경남 합천군 (이하 생략)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이 노후화로 옥상의 방수 기능이 저하되어 비가림용 경량철골지붕 시설(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이 민원 시설은 낡은 주택의 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부득이 설치한 것이니, 행위의 목적 및 정도를 감안하여 이 민원 처분을 취소, 유예 또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주택은 건축신고나 허가 없이 옥상에 이 민원 시설이 설치되었고, 이 민원 시설 밑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여 무단 증축에 해당하므로, 이 민원 처분은 적법하고, 취소는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주택은 1982. 9. 8. 사용승인된 벽돌구조 평슬래브 지붕의 지상1층 단독주택으로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주택 주요 현황 >

위치	경남 합천군 (이하 생략)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17㎡	구조/층수	벽돌조 / 지상 1층
용도	단독주택	건축면적	81.74㎡ (건폐율 37.67%)
지붕	평슬래브	사용승인	1982. 9. 8.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평슬래브 옥상 바닥의 반복되는 누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경 건축신고 없이 이 민원 주택 평슬래브 지붕 위에 비가림을 위해 이 민원 시설을 설치하였고, 피신청인은 2023. 2. 21.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위반건축

물 신고 민원을 접수하여, 2023. 4. 4. 신청인에게 건축신고 없이 임의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다. 이 민원 시설은 경량철골 구조물을 설치하여 경사진 금속판을 고정시킨 구조로 이 민원 주택의 평슬래브 옥상 지붕 전체를 덮고 있는데, 이 민원 시설 하부에는 벽체의 기능을 하거나 수직면을 막는 시설이 없고, 실내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한 흔적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민원 시설 외관 및 그 하부공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시설 외관 및 하부공간 현황 >

외관	하부공간
그림 생략	그림 생략

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23. 10. 24.부터 이 민원 시설과 유사한 평슬래브 옥상 상부 비가림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고, 확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평슬래브 지붕의 노후 건물은 지붕누수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도막방수, 우레탄 방수, 시트방수 등과 같은 일반방수는 그 보수 주기가 짧고 성능에 한계가 있어, 저렴하면서도 반영구적인 경량 철재 비가림시설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과 비교적 중소 규모의 도시지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와 이로 인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 2) 유사사례가 빈발하는 10개 시·군·구는 우리 위원회에 비가림시설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선의견을 제출하였고, 개선의견의 대부분은 다락 높이 기준을 준용한 범위 이내의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 3) 비가림시설로 민원이 빈발하는 일부 시·군·구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

정하여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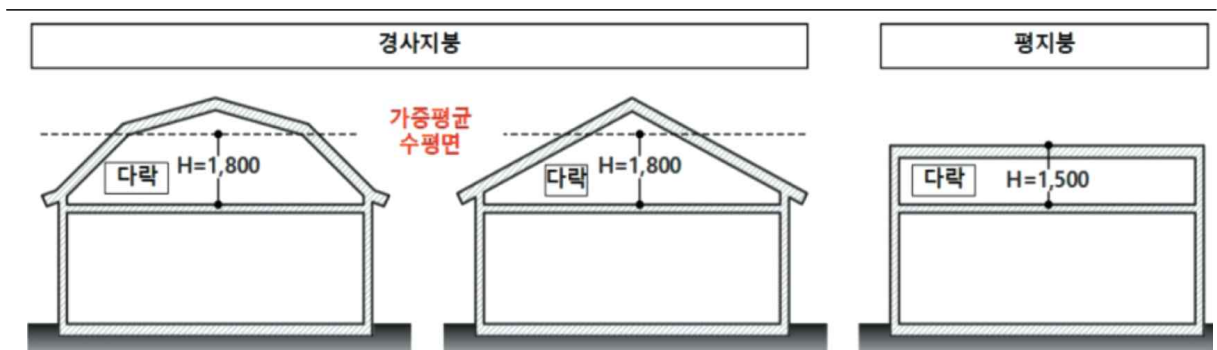
라. 「건축법」은 건축물의 높이가 늘어나면, 그 정도에 관계 없이 증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단증축과 경미한 사항의 이행강제금 차이는 10배 이상이고,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무단증축과 경미한 사항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비교>

	「건축법」 제80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위반건축물 항목의 제13호
무단증축	1m^2 시가표준액 $\times$ 위반면적 $\times 0.5$	$\times 0.7$	
경미한 사항	1m^2 시가표준액 $\times$ 위반면적		$\times 0.03$

마.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이 일정 높이 이하를 충족하고, 그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하여는 다락으로 보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락 기준 >



바. 태양광 발전설비는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가 비가림시설과 유사하나,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설치 높이가 5미터 이내이면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주택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으로 평슬라브구조인 옥상층의 바닥

균열에 따른 누수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거주하는데 불편과 보건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초래될 수 밖에 없는 점, ② 도막방수나 시트방수로 시공하면 장기적인 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보수·보강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반면, 이 민원 시설은 옥상층을 철재 덮개로 덮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비용대비 높은 방수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점 ③ 이 민원 시설은 철재 기둥과 지붕으로만 구성되어 하부를 실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경사지붕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다락에 대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있는 점, ④ 태양광설비를 위한 시설물은 높이 5미터까지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 유사한 구조로 누수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한 이 민원 시설을 무단증축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농촌지역 및 중·소도시지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옥상의 균열 및 누수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한 이 민원 시설과 같은 구조물로 인해 전국적으로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다수의 지자체가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도 2023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시작하여 대책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가림시설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시설에 대한 무단증축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등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4월 22일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이행강제금 100분의 1로 감면

나. 관련 조문: 안 제42조의3제4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이행강제금 부과액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김 현 태



관련 법령

1. 가설건축물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홍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략)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홍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홍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 ⑩ (생략)

2. 이행강제금 관련 법령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 ⑦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115조의2제2항 관련)

1 ~ 12. (생략)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 (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5. 8. 22.

나. 발 의 자 :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5. 8. 22.

2. 제안이유

- 농업인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필수농자재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필수농자재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3조)

라. 중복지원 제한(안 제1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제4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조의2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농업축산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8. 11. ~ 2025. 08.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농가부채는 증가하고 농가소득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필수 농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농산물 판매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농업인의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으로 농업 생산활동 보장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통계청의 주요농산물의 생산비를 보면 2022년 대비 2024

년의 증감률은 벼 3.3%, 마늘 12.8%, 양파 4%, 고추 22%,
 콩 21.5%로 생산비가 급등하고 있음

「농산물생산비 통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2년 대비 24년	
				증감	증감률
10a당 논벼 생산비	854,461	875,360	882,310	27,849	3.3
10a당 마늘 생산비	3,777,882	4,204,188	4,262,012	484,130	12.8
10a당 양파 생산비	2,941,418	3,113,089	3,060,776	119,358	4.0
10a당 고추 생산비	4,323,916	4,801,854	5,275,395	951,479	22.0
10a당 콩 생산비	746,640	888,968	907,177	160,537	21.5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필수농자재 지원 및 지원금액, 지원방법을, 안 제7조부터 1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에 중복지원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인에게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사료 등의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액은 직전 3개년 농자재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원액 상한은 농가당 100만원으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품목, 대상자,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지급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항에 대한 중복지원은 제한하고 있음.

- 전국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는 충남 공주시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25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음.
- 농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예산 확보가 중요해 보이는 바, 세부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비용추계를 통해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거창군에서는 여러 부분에 농자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제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지원사업과 상호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 나. 관련 조문 :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나. 작목별 구입비가 상이함에 따라 심의위원회 수립 후 작목에 따른 사업비용 추계

4. 관련 의견

- 가. 거창군 총 농가 수와 지원금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최대 지원
- * 규모별(경영, 소득) 지원 제한 규정 필요

작성자 농업축산과장 백 승 열

관련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11. 삭제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

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8. 2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8. 22.

2. 제안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할 경우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 정비함(안 제1조·제4조·제10조·제13조)
- 나. 법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14조제4항)
 - 1) 가로수의 조성·관리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위임: 고지
일부터 30일 이내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5. 15.~6. 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제1조에서 법 인용조항을 정비했으며 제4조에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는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조례에서 설치조항을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임.

- 제4조에 신설되는 2호, 3호는 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4호는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임.
-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 제14조제4항은 법 제12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임.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련 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5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⑤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2024. 12. 20.>

⑥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대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2024. 12. 20.>

[시행일: 2025. 6. 21.] 제12조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2024. 1. 23.>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2.>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4. 1. 2.>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일괄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비용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거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8. 2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8. 22.

2. 제안이유

- 가. 우리 군은 친환경 농식품 판로 극대화과 거창창포원 먹거리 인프라를 보완하고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체험·교육을 하나로 연계한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나. 유기농복합단지 건축계획을 구체화함에 따라 거창창포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을 확장하는 『거창창포원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업명 :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
- 2) 위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71 일원
- 3) 사업기간 : 2022. ~ 2027. (6년)
- 4)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3,063.6m² / 건물연면적 : 3,558.26m²
(지상1층)
- 5) 사업비 : 18,000백만원(국 9,000, 도 2,700, 군 6,300)

나. 거창창포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변경개요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계획관리지역 증 4,864.3m², 농림지역 감 4,864.3m²
 - 2) 유원지 확장 : 기정 A=43,136.0m² 변경 A=48,000.3m²
(증 4,864.3m²)
- ※ 편입 필지 : 남상면 월평리 2265 등 6필지(4864.3m²)

3)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 (시설신설) 편익시설(유기농복합단지) 신설
- (시설폐지) 편익시설(에코힐링센터), 휴양시설(글램핑장) 폐지
- (명칭변경) 특수시설(자연에너지학습관 → 치유센터) 명칭변경

다. 결정사유

- 1) 2023년 11월 유기농복합단지를 포함한 거창창포원 군관리계획(유원지)이 결정 변경되었으나, 유기농복합단지 건축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과 유원지 확장이 필요
- ※ 건축 층수 및 건축면적 : (당초) 3층, 1,800m² → (변경) 단층, 3,588.26m²

- 2) 확장되는 구역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유원지”시설결정 변경(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함

※ 농림지역은 유원지 시설 불가, 농업진흥지역(4,684.3m²) 해제 필요

라. 그간 추진사항

- 1) 2022. 03. : 유기농복합단지 공모사업 선정
- 2) 2023. 10. : 유기농복합단지 기본계획 승인
- 3) 2023. 11. : 거창창포원 군관리계획(시설:유원지) 결정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3-513호, 2023.11.16.)
- 4) 2023. 11. : 거창창포원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고시
(거창군 고시 제2023-145호, 2023.11.30.)
- 5) 2024. 07. : 거창군 공공건축 심의
- 6) 2024. 09. : 제안설계 공모 선정 및 설계 착수
- 7) 2025. 03.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요청(도시건축과)
- 8) 2025. 07. : 군관리계획 입안 요청(미래농업과 → 도시건축과)
- 9) 2025. 08. :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마. 향후 추진계획

- 1) 2025. 09. : 거창군 계획위원회 심의
- 2) 2025. 10. :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신청(거창군 → 경상남도)
농업진흥구역 해제 신청(거창군 → 경상남도)
- 3) 2025. 12.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상남도 농정위원회 심의
- 4) 2026. 03. :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5) 2026. 06. ~ 2027. 12. : 공사 시행 및 유기농복합단지 운영 준비

4. 참고사항

- 가. 편입토지 조서 : 붙임 1
- 나. 거창군 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안 : 붙임 2
- 다. 관계법령 : 붙임 3

5.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은 거창군이 경남1호 지방정원인 거창창포원 일원에 먹거리, 편의시설, 체험프로그램,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포원에 부족했던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농산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거점시설 설치를 위해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2023년 11월 유기농복합단지를 포함한 거창창포원 군관리계획(유원지)이 결정변경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건축계획이 변경되어 용도지역 변경과 유원지 확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음.
- 거창창포원 군관리지역(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변경개요를 보면 농림지역 6필지 4,864.3m²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변경)하고 금회 결정(변경)된 계획관리지역을 유원지 시설 결정을 통하여 유원지로 확장코자 하는 것으로
- 유원지 확장은 당초 유기농복합단지를 3층으로 계획하였으나

방문객 동선 효율성 제고, 중앙 잔디광장 배치를 통한 개방감 극대화, 쾌적한 시야 확보,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설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 제고를 위해 계획이 단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구역을 확장 하려는 것임.

-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은 기존의 휴양시설용지인 글램핑장과 편익시설용지인 에코힐링센터를 폐지하여 편익시설용지 유기농복합단지를 신설하고 자연에너지학습관이 치유센터로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시설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임.
- 거창창포원 인프라 확충과 연계한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고 그동안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었던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건축계획 변경도 의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금회 제출된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붙임1
편입토지 조서

연 번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총계			6,237.9	4,864.3	
1	남상면 월평리 2262	답	502.8	502.8	거창군
2	남상면 월평리 2263	답	1,271.1	1,271.1	거창군
3	남상면 월평리 2264	답	828.6	828.6	거창군
4	남상면 월평리 2265	답	1,667.0	1,430.6	거창군
5	남상면 월평리 2266	답	761.0	629.2	거창군
6	남상면 월평리 2267	답	1,207.4	202.0	거창군

1. 계획의 목적

- 가. 유원지 내 친환경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3층에서 단층으로 건축계획이 변경되어 건축면적증가에 따른 유원지 시설 확장이 필요하다.
- 나. 군계획시설(유원지) 변경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과 유원지 시설 확장에 따른 추가 편입구역의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계획을 추진하고자 함.

<입지여건>



2. 계획의 개요

가. 계획대상지

- 1)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65번지 일원
- 2)면 적 : 기정 43,136.0㎡ → **변경 48,000.3㎡(증 4,864.3㎡)**
- 3)용도지역 : 기정 계획관리지역 (43.136.0㎡, 89.9%)
기정 농림지역 (4,864.3㎡, 10.1%)
변경 계획관리지역 (48.000.3㎡, 100.0%)

3.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804,144,882	-	804,144,882	100.0	
주거 지역	소계	4,878,158	-	4,878,158	0.6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2,455	-	1,462,455	0.2	
	제2종일반주거지역	3,126,022	-	3,126,022	0.4	
	제3종일반주거지역	196,057	-	196,057	-	
	준주거지역	93,624	-	93,624	-	
상업 지역	소 계	347,740	-	347,740	-	
	일반상업지역	347,740	-	347,740	-	
공업 지역	소 계	1,565,584	-	1,565,584	0.2	
	일반공업지역	1,537,142	-	1,537,142	0.2	
	준공업지역	28,442	-	28,442	-	
녹지 지역	소 계	25,409,121	-	25,409,121	3.2	
	보전녹지지역	1,654,760	-	1,654,760	0.2	
	생산녹지지역	7,651,048	-	7,651,048	1.0	
	자연녹지지역	16,103,313	-	16,103,313	2.0	
관리 지역	소 계	263,563,543	증) 4,864.3	263,568,407.3	32.7	
	보전관리지역	173,201,156	-	173,201,156	21.5	
	생산관리지역	8,356,452	-	8,356,452	1.0	
	계획관리지역	82,005,935	증) 4,864.3	82,010,799.3	10.2	
농림지역		467,676,441	감) 4,864.3	467,671,576.7	58.2	
자연환경보전지역		40,704,295	-	40,704,295	5.1	

※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25-196호(2025.05.01.)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면적을 반영함

2)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남상면 월평리 226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864.3	100%	• 거창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군계획시설(유원지)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유원지 결정(변경)(안)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유원지	남상면 월평리 2308번지 일원	43,136.0	증) 4,864.3	48,000.3	거창군 고시 제2023-145호 (2023.11.30.)	

2) 유원지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정(변경)사유
1	유원지	- 유원지 확장 -면적 : 43,136.0㎡ → 48,000.3㎡ (증 4,864.3㎡)	거창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유원지 변경

다.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유원지 조성계획 총괄표(변경)(안)

구분	부지면적(㎡)		건 축 면 적(㎡)				규 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총		동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43,136.0	48,000.3	5,615.38	7,360.43	10,274.55	8,788.81	13	10	7	6	
유희시설	3,125.0	3,125.0	-	-	-	-	-	-	-	-	
휴양시설	2,638.0	-	44	-	44	-	1	-	1	-	
특수시설	17,142.0	17,142.0	2,609.24	2,609.24	4,022.66	4,022.66	7	7	3	3	
편익시설	5,712.0	12,841.3	2,962.14	4,751.19	6,208	4,766.15	5	3	3	3	
관리시설	6,245.0	8,225.0	-	-	-	-	-	-	-	-	
녹지 및 기타	8,274.0	6,667.0	-	-	-	-	-	-	-	-	

2)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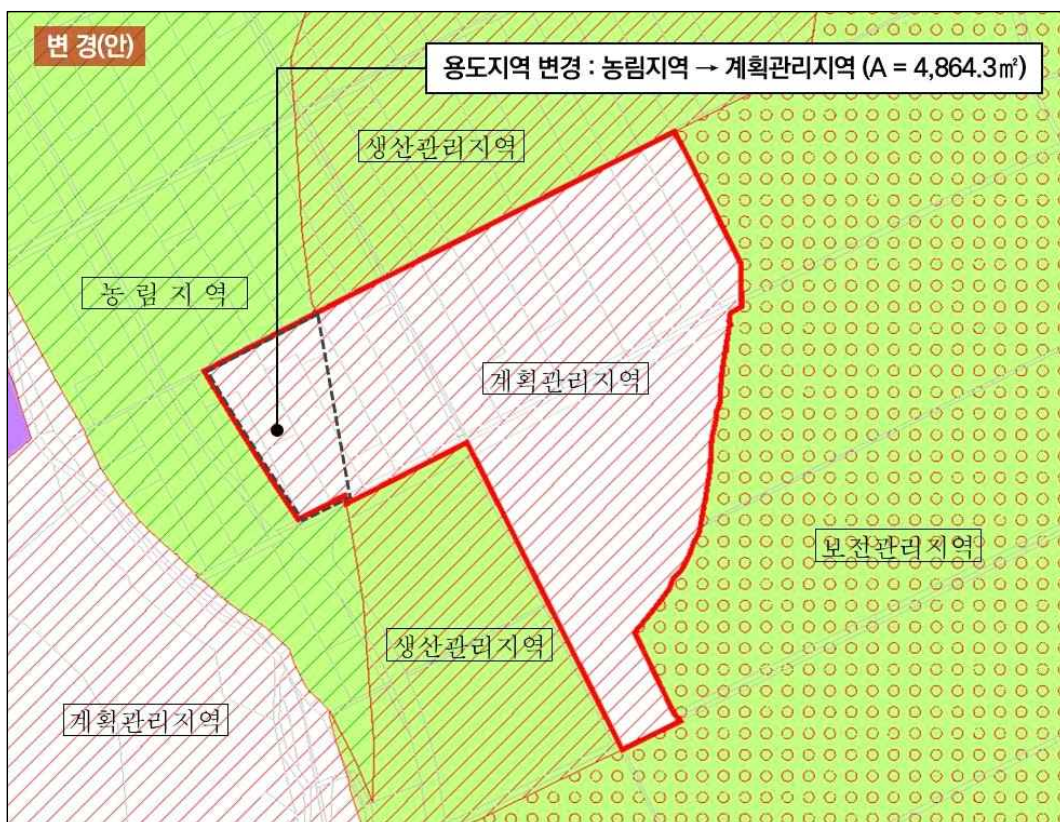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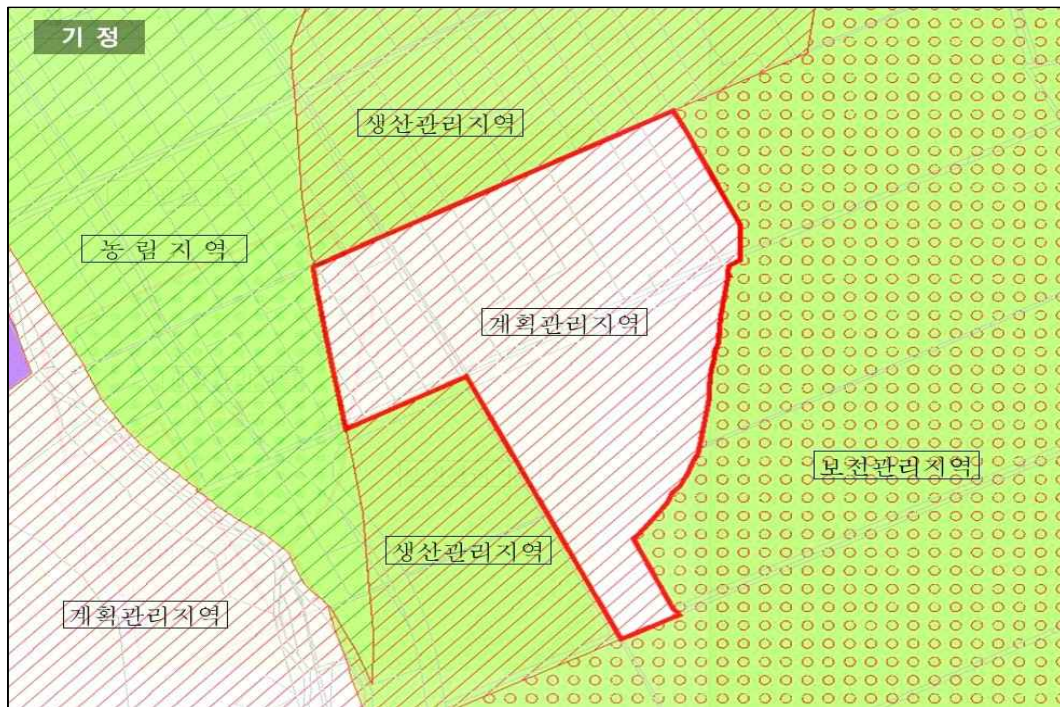
구분		부지면적(㎡)		건 축 면 적(㎡)				규 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총		동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43,136.0	48,000.3	5,615.38	7,360.43	10,274.55	8,788.81	13	10	7	6	
유희 시설	소계	3,125.0	3,125.0	-	-	-	-	-	-	-	-	
	다목적 놀이마당	3,125.0	3,125.0	-	-	-	-	-	-	-	-	
휴양 시설	소계	2,638.0	-	44	-	44	-	1	-	1	-	
	글램핑장	2,638.0	-	44	-	44	-	1	-	1	-	
특수 시설	소계	17,142.0	17,142.0	2,609.24	2,609.24	4,022.66	4,022.66	7	7	3	3	
	열대식물원	1,377.0	1,377.0	1,617.73	1,617.73	1,709.13	1,709.13	2	2	1	1	
	커뮤니티광장	9,497.0	9,497.0	-	-	-	-	-	-	-	-	
	진입광장	159.0	159.0	-	-	-	-	-	-	-	-	
	야외공연장	3,737.0	3,737.0	-	-	-	-	-	-	-	-	
	창포문화관	1,962.0	1,962.0	698	698	1,745	1,745	3	3	1	1	
	치유센터	410.0	410.0	293.51	293.51	568.53	568.53	2	2	1	1	
편의 시설	소계	5,712.0	12,841.3	2,962.14	4,751.19	6,208.89	4,766.15	5	3	3	3	
	방문자센터	1,223.0	1,223.0	1,132.14	1,132.14	1,177.89	1,177.89	1	1	1	1	
	전시판매점	391.0	391.0	30	30	30	30	1	1	1	1	
	에코힐링센터	4,098.0	-	1,800	-	5,000	-	3	-	1	-	
	유기농복합단지	-	11,227.3	-	3,589.05	-	3,558.26	-	1	-	1	
관리 시설	소계	6,245.0	8,225.0	-	-	-	-	-	-	-	-	
	도로	1,514.0	2,777.0	-	-	-	-	-	-	-	-	
	보행자전용도로	1,164.0	1,164.0	-	-	-	-	-	-	-	-	
	주차장	3,567.0	4,284.0	-	-	-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8,274.0	6,667.0	-	-	-	-	-	-	-	-	
	녹지	8,274.0	6,667.0	-	-	-	-	-	-	-	-	

3)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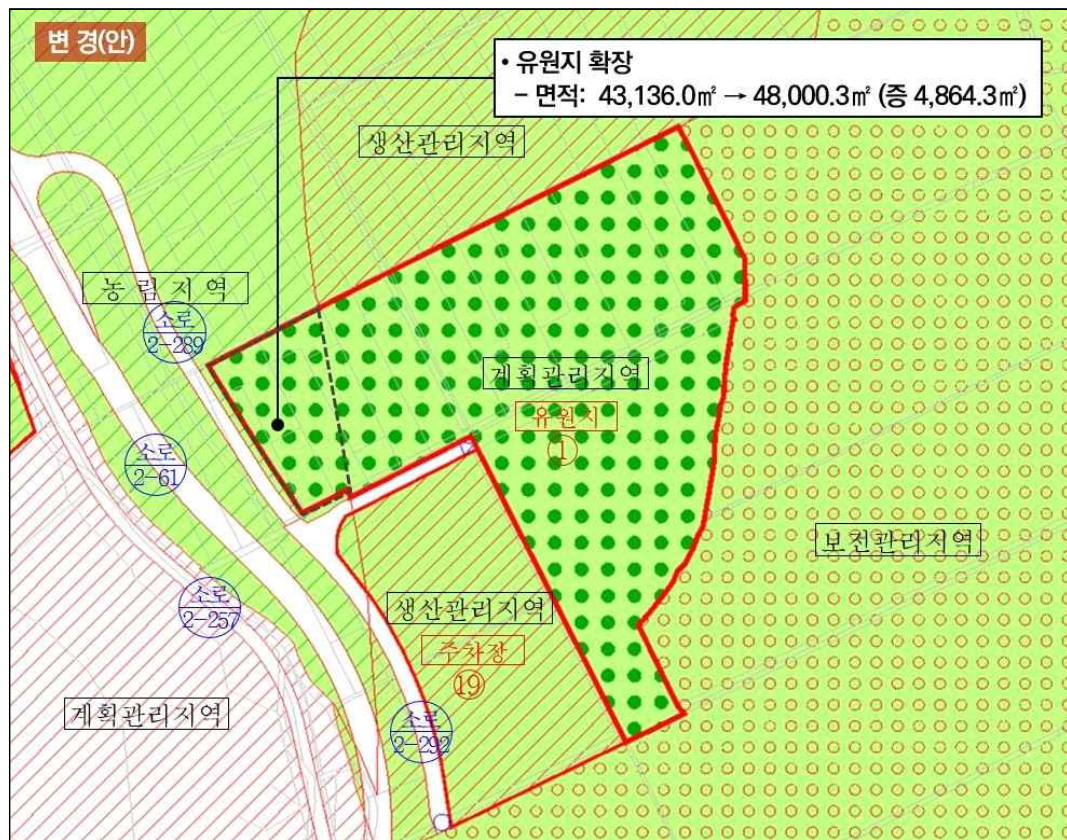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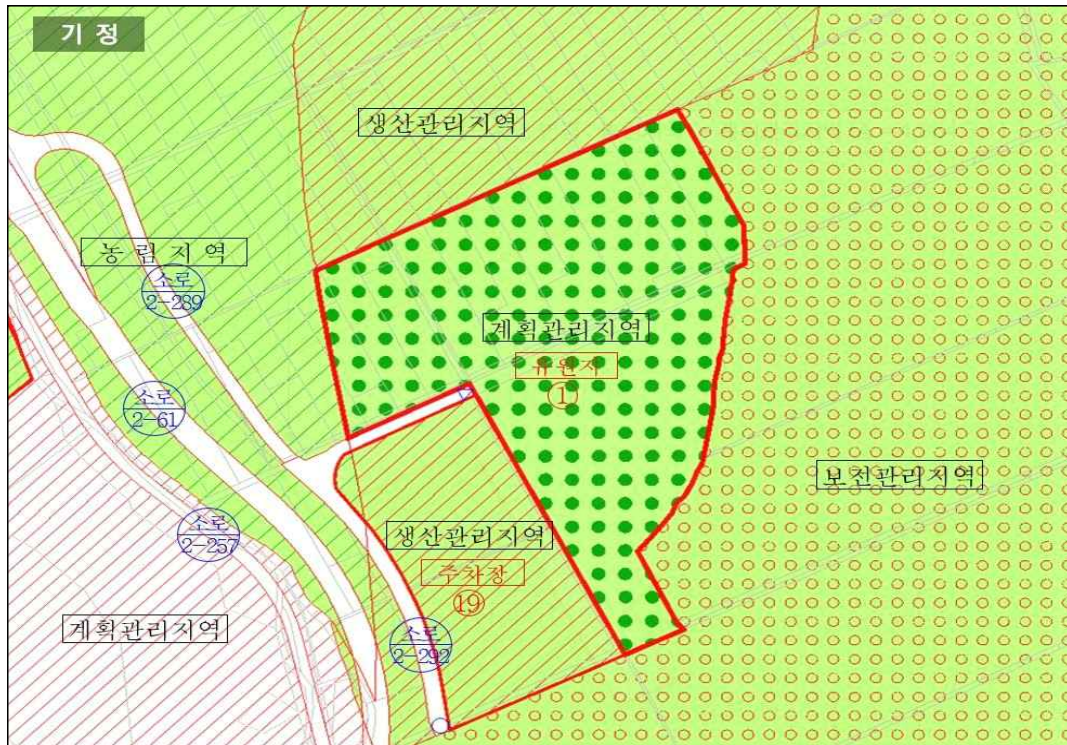
시 설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유희시설	-	-	다목적 놀이마당	-	-
휴양시설	-	-	글램핑장	• 휴양시설용지(글램핑장) 폐지 - 2,638.0㎡→0㎡(감 2,638.0㎡)	• 유원지 확장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특수시설	-	-	열대식물원	-	-
	-	-	커뮤니티광장	-	-
	-	-	진입광장	-	-
	-	-	야외공연장	-	-
	-	-	창포문화관	-	-
	-	-	치유센터	• 시설 명칭 변경 - 자연에너지학습관 → 치유센터	• 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른 시설 명칭 변경
편익시설	-	-	방문자센터	-	-
	-	-	전시판매점	-	-
	-	-	에코힐링센터	• 편익시설용지(에코힐링센터) 폐지 - 4,098.0㎡→0㎡(감 4,098.0㎡)	• 유원지 확장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	-	유기농복합단지	• 편익시설용지(유기농복합단지) 신설 - 0㎡→11,227.3㎡(증 11,227.3㎡)	• 유원지 확장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관리시설	-	-	도로	• 관리시설용지(도로) 면적변경 - 1,514.0㎡→2,777.0㎡(증 1,263.0㎡)	• 유원지 확장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	-	보행자전용도로	-	-
	-	-	주차장	• 관리시설용지(주차장) 면적변경 - 3,567.0㎡→4,284.0㎡(증 717.0㎡)	• 유원지 확장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녹지 및 기타	-	-	녹지	• 녹지 및 기타시설용지(녹지) 면적변경 - 8,274.0㎡→6,667.0㎡(감 1,607.0㎡)	• 유원지 확장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4.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결정(변경)(안)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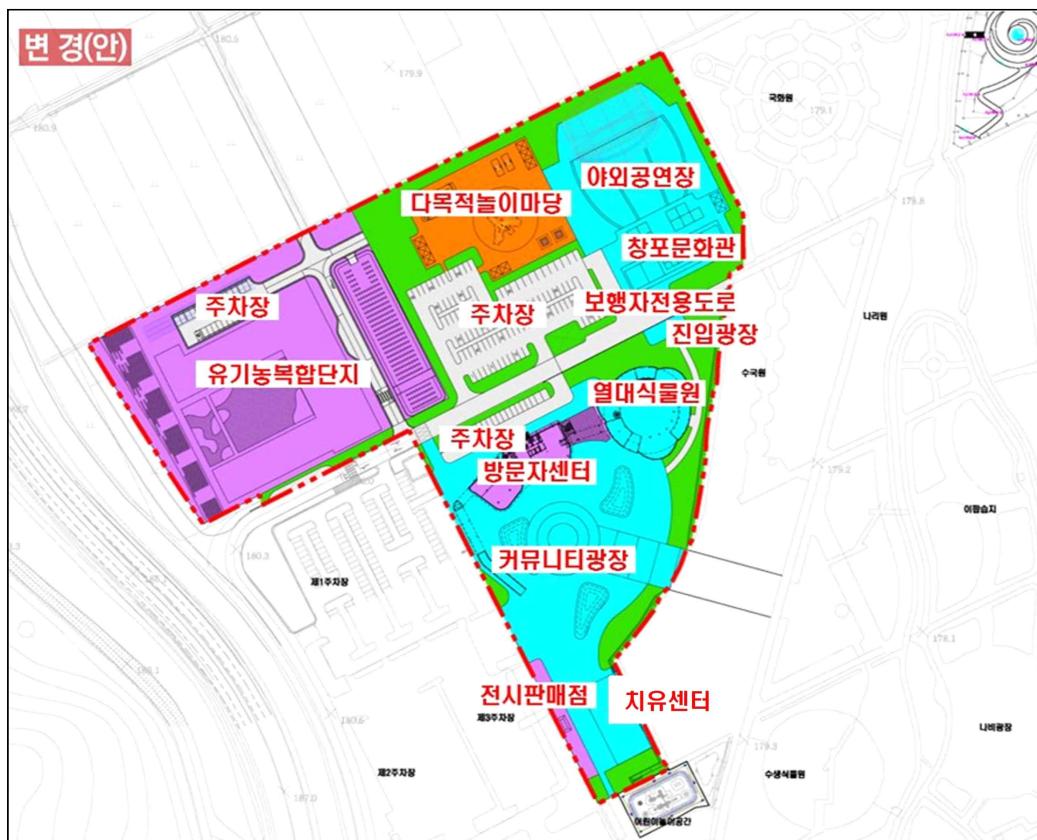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도면



나. 군관리계획(시설: 유원지) 결정(변경)(안)도면



다.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도면



라. 군관리계획(유원지) 총괄 변경(생태관광문화복합단지 실시계획 인가 반영)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도 - 생태관광문화복합단지 및 유기농복합단지
변경 총괄>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

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8. 2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8. 22.

2. 제안이유

- 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지역 과학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재위탁하여 운영 · 관리하고자 함
- 나.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현황
 - 1) 시 설 명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 2)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60, 정장공원 부지 내

3) 규 모 : 2,833m²

- 천적생태과학관 : 1,040m²(지하 1층, 지상 3층)
- 천적생산 온실 : 비닐온실 6동 1,530m²
- 곤충체험 온실 : 유리온실 1동 263m²

나. 민간위탁 내용

- 1) 위탁사무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과학관 시설물, 전시시설, 주변 조경 유지 및 관리
 - 천적곤충 교육 · 체험 · 전시 · 홍보 기획 및 운영
 - 천적곤충 표본 제작 및 천적 연구
 - 천적 생산 및 농가 공급, 기타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 2)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3) 위탁예산 : 연간 240,000천원 정도(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미포함)

※ 2023년 위탁비용 산정용역 결과 및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재산정 예정

- 4)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선정
- 5)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전문성, 유사시설 경력, 운영 능력 등 전반 고려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평가

다. 추진사항

- 1) 2011. 10월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준공 및 개관
- 2) 2012. 1월 : 전문과학관 등록(경남 제4호)
- 3) 2013. 9월 : 천적곤충 생산 · 공급 개시
- 4) 2016. 6월 : 최우수과학관상 수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 5) 2019. 2월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전시개선사업(리모델링) 준공
- 6) 2022. 10월 : 증강현실(AR) 체험 프로그램 도입

- 7) 2023. 12월 : 거창군 협력 농촌진흥청 ‘천적 관계도’ 책자 발간
 - 8) 2024. : 신화속의 곤충전 등 특별전시회 개최(5회)
 - 9) 2025. 8월 : 국립농업박물관-거창천적생태과학관 협력전시회 개최
- 라. 향후 추진 일정
- 1) 2025. 9월 : 민간위탁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2) 2025. 10월 ~ 11월 : 적격자 선정(민간위탁심의위원회)
 - 3) 2025. 12월 : 협상 및 협약 체결
 - 4) 2025. 12월 : 인계 · 인수 및 고시

4. 동의(승인)사항

- 가. 편입토지 조서 : 붙임 1
- 나. 거창군 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안 : 붙임 2
- 다. 관계법령 : 붙임 3

5. 참고사항

- 가.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붙임 1
- 나. 운영원가 산출내역 : 붙임 2
- 다. 관계법령 : 붙임 3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위·수탁 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 현 수탁기관인 (사)천적이용정보교류센터는 2023년~2025년까지 재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이번 동의안에서는 재계약이 불가능하여 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위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
-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은 곤충과 관련된 천적에 관한 자료의 발굴,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를 하며, 천적에 대한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와 연구, 천적을 이용한 체험, 탐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충방제용 천적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어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수탁자 자격을 보면 과학관(유사시설) 구축이나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천적 연구업체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으로 기획, 운영하며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로 되어 있으나 수탁자격을 갖추고 입찰에 응모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탁자 모집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거창생태과학관은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간 민간 위탁 운영에 의한 방문객 수, 천적공급량 등의 성과를 살펴볼 때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I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II 시설개요

- 시 설 명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 2012.1. : 전문과학관 등록(경남 제4호)
- 위 치 : 거창읍 거함대로 3372-60 정장공원 부지 내
- 규 모 : 2,833m²
 - 천적과학관 : 1,010m² (지하1층, 지상3층)
 - 천적생산 온실 : 비닐온실 6동 1,530m²
 - 곤충체험 온실 : 유리온실 1동 263m²

III 위탁운영 현황

- 위탁현황

위탁 기간	선정 방식	위탁사무	수탁자
2011.10.25. ~ 2013.11.30.(2년)	협상에 의한 계약	과학관 운영	(사)천적이용정보교류센터 (대표이사 : 구덕서)
2013.12.01. ~ 2016.12.31.(3년)	재계약	과학관 운영 천적생산공급	
2017. 1. 1. ~ 2019.12.31.(3년)	재계약	과학관 운영 천적생산공급	
2020. 1. 1. ~ 2022.12.31.(3년)	협상에 의한 계약	과학관 운영 천적생산공급	(사)천적이용정보교류센터 (대표이사 : 구덕서)
2023. 1. 1. ~ 2025.12.31.(3년)	재계약	과학관 운영 천적생산공급	

○ 2023 ~ 2025년 운영 위탁금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위 탁 금	225,000	240,000	249,500	인건비, 운영비 등

* 2023년~2032년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운영 위탁비용 산정용역 결과 및 물가 상승률 반영

** 공공운영비, 천적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미포함

○ 인력현황 : 4명

분 야	운영 총괄	회계·시설관리	교육·체험	천적 생산
인 원	1명	1명	1명	1명
직 무	과학관 운영 및 천적생산 총괄	회계업무 및 시설관리	체험프로그램 기획 과학관 안내 . 해설	천적생산 및 공급

○ 운영실적

① 방 문 객 : '23년 대비 '24년 153%

구 분	2011~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 8월 5일기준
인 원(명)	176,802	8,839	13,347	20,387	9,333

② 천적공급 : '23년 대비 '24년 177% * 2013~2019년 : 천적 무상공급

구 분	2013~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공급량(병,120ml)	59,670	3,211	2,508	4,443	1,855
농가수(명)	1,337	10	20	40	13

IV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간) * 이후 1회 재계약(갱신) 가능

○ 위탁범위

- 시설운영 : 과학관, 곤충체험·사육온실 및 주변 조경 관련 시설물 관리
- 전시운영 : 천적교육, 전시·홍보, 전시물의 기획, 유지보수 등
- 천적생산 : 해충방제용 천적곤충 생산, 농가 공급 및 교육

○ 운영 위탁금 : 연간 240,000천원 정도

- 공공운영비, 천적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자체예산 편성

- 2023년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운영 성과 평가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결과 및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위탁사무 범위 및 위탁 운영비 재산정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수탁자 자격

- 과학관(유사시설) 구축이나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천적 연구업체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으로 기획, 운영하며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

V 그간 추진경과

- 2011년 10월 : 천적생태과학관 준공 및 개관(24억원)
- 2012년 1월 : 전문과학관 등록(경남 제4호)
- 2013년 2월 : 천적생산 온실 3동(804㎡) 준공
- 2013년 9월 : 천적 생산 공급 개시
- 2014년 2월 : 곤충체험 유리온실 1동(263㎡) 준공
- 2015년 2월 : 천적생산 온실 1동(240㎡) 준공
- 2016년 6월 : 최우수과학관상 수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 2017년 10월 : 제7회 국제과학관 심포지엄 최우수 논문상 수상
- 2018년 1월 : 천적생산 온실 2동(486㎡) 준공
- 2019년 2월 : 천적생태과학관 리모델링 준공(2억)
- 2020년 4월 : 천적 유상공급 전환(친환경농가 무상)
- 2021년 : 한국과학관협회 전시콘텐츠 개발사업 선정(2.5억원)
- 2022년 : 한국과학관협회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0.9억원)
- 2022년 10월 : 증강현실(AR) 체험 프로그램 도입
- 2023년 3월 : 천적 특허 등록 2건
 - ※ 애뿔털이진딧물의 천적연구개발 및 천적이용 친환경 딸기 재배법
- 2023년 12월 : 거창군 협력 농촌진흥청 ‘천적 관계도’ 책자 발간
 - ※ 응애류, 진딧물류, 복숭아순나방 등 주요 해충 13종의 먹이사슬 관계도 표시
- 2024년 : 특별전시회 개최 5회
- 2025년 8월 : 국립농업박물관-거창천적생태과학관 협력전시회

VI 향후계획

- 2025. 7.~ 8. :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 2025. 9. : 민간위탁운영 군의회 동의
- 2025. 9. : 수탁기관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2025. 10.~ 1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격자 선정
- 2025. 12. : 협상 및 협약체결
- 2025. 12. : 인계·인수 및 고시

VII 기대효과

- 천적생태과학관의 운영을 전문화하고 지역 과학 문화 확충
- 안정적인 천적생산을 통한 천적활용 저탄소농업기술 보급

붙임2

운영원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액	구성비	산출내역(기초)
1. 인건비	급여 1	55,356	68.25%	4,613천원×12월=55,356천원
	급여 2	38,004		3,167천원×12월=38,004천원
	급여 3	28,908		2,409천원×12월=28,908천원
	급여 4	28,908		2,409천원×12월=28,908천원
	소 계	151,176		
	퇴직연금 1	4,632		392천원×12월=4,632천원
	퇴직연금 2	3,180		265천원×12월=3,180천원
	퇴직연금 3	2,412		201천원×12월=2,412천원
	퇴직연금 4	2,412		201천원×12월=2,412천원
	소 계	12,636		
합 계		163,812		
2. 경비	인적보험료	12,055	5.02%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 고용 산재
				근로1 208 185 0 0
				근로2 142 127 36 23
				근로3 22 96 6 18
				근로4 22 96 6 18
				계(12개월) 4,721 6,048 570 712
	복리후생비	6,240	2.60%	130천원×4인×12개월 = 6,240천원
	재료비	13,000	5.42%	5,000천원×기획전시 2회 = 10,000천원 250천원×체험재료 12개월 = 3,000천원
	통신비	792	0.33%	66천원×12개월 = 792천원
	우편료	100	0.04%	100천원×1식 = 100천원
	소모품비	6,900	2.87%	음료,복사용지,사육소모품,문구류,화장지, 종이컵, 소규모수선, 기타
	홍보광고비	1,000	0.42%	플랭카드, 전단지등
	여비교통비	1,000	0.42%	각 협회 회의등의 출장, 채집등의 비용
	지급수수료	6,000	2.50%	공인인증수수료, 영조물 배상보험, 주민세, 회계수수료, 소방안전관리회, 퇴직연금수수료, 홈페이지관리비, 카드연회비, 과학관 협회비 등
	도서인쇄비	300	0.12%	스탬프, 기념품 인쇄 등
경비합계		47,387	19.74%	
순 원 가		211,199	88.0%	인건비 + 경비
3. 일반관리비(6%이내)		6,983	2.90%	순원가 × 3.3%
4. 이윤(10%이내)		-	0.00%	미산정
운영원가		218,182	90.9%	순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5. 부가가치세(10%)		21,818	9.10%	운영원가 × 10%
총 운영원가		240,000	100%	

※ 2023~2032년 위탁비용 산정용역 결과에 근거함. 물가상승률 반영시 변동될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위탁)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전부개정 2021.7.7.)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8. 2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8. 22.

2. 제안이유

- 가. 지애플(G-APPLE)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함
- 나. 재계약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연속성, 안정성 유지 등 거창사과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현황
 - 1) 시 설 명 : 지애플(G-APPLE)
 - 2) 위 치 : 거창읍 거함대로 3372, 푸드종합센터 옆

3) 규 모 : 999.12㎡(1층 535.13㎡, 2층 463.99㎡), 철골구조

구 분	면적(㎡)	용 도	비 고
합계	999.12	-	
1층	535.13	사과제품전시장, 휴식공간, 사무실 등	1, 2층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일반음식점)
2층	463.99	휴식, 체험, 교육 공간, 옥외휴식공간 등	

4) 수탁자 : 월천권역영농조합법인(대표 김정오)

－ 운영인력 : 8명(대표 1, 직원 7)

5) 위탁기간 : 2023. 10. 18. ~ 2025. 12. 31.(2년 2개월)

－ 재계약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6) 위탁사무 : 지애플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 세부사업 : 사과관련 가공(음료·빵·식사), 판매, 체험 운영 등

7) 위탁지원금 : 없음

－ 2023년 : 20,000천원 / 2024년 : 26,697천원 / 2025년 : 0원

－ 위탁운영 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이며, 운영 초과수익 발생 시 「공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음

(배분율 등 세부사항은 위탁기간 종료 후 심의 후 결정 가능함)

※ 민간위탁 타당성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결과('22. 8.)」에 따른 위탁운영비 산출 : 운영초기(2년) 적자 예상, 3년차 부터 흑자 운영 예상

나. 그간 추진현황 및 계획

1) 2022. 10. : 지애플 운영주체 공모 및 선정

2) 2023. 1. ~ 8. : 위탁운영 실시(농업회사법인영클팜)

3) 2023. 8. ~ 9. : 위탁중단에 따른 운영주체 공모 및 선정

4) 2023. 10. 26. ~ 현재 : 위탁운영 실시(월천권역영농조합법인)

- 5) 2024. 2.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전환
- 6) 2024. 7. : 식사류 신메뉴 개발(사과비빔밥, 사과돈가스, 사과국수)
- 7) 2025. 8. 6. : 재계약 적정성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 재계약 적정함 원안 가결
 - 평가점수 : 84.6점(정량평가 25점 + 정성평가 59.6점)
- 8) 2025. 9. :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군의회 동의 요구
- 9) 2025. 10. ~ 12. : 계약철차 진행

4. 참고사항

- 가. 지애플 민간위탁 운영 현황, 재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 붙임 1, 2
 나. 관계법령 : 붙임 3
- 1) 「공유재산법」 제27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제9조
 - 4)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7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애플(G-APPLE)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위·수탁 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현 수탁기관인 월천권역영농조합법인(대표 김정오)에 재계약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지애플(G-APPLE)은 2023년 1월부터 3년간 농업회사법인 영클팜에 민간위탁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수탁기관이 2023년 6월 28일 G-애플 위·수탁 협약 해지를 요청함

으로써 위탁중단에 따른 운영주체 공모를 통하여 2023년 10월 부터 현 수탁기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 현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실시한 이후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고 사과비빔밥, 사과돈가스, 사과국수 등 식사류 신메뉴를 개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붙임1에 나와 있듯이 매출액과 방문객이 증가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위탁지원금은 2023년 20,000천원, 2024년 26,697천원을 지원 하였으나 2025년에는 현재 지원금이 없으며 이번 동의안에 위탁운영 관리비를 수탁자 부담으로 계약하여 위탁 지원금은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행정 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재계약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은 없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2025년 8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84.6점으로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거창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지구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37억 원을 확보해 지애플이 준공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운영 실태가 거창사과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거창사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요구되며 지애플 운영에 있어 당초 계획했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발굴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됨.

붙임1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운영 현황

- 시 설 명 : 지애플(G-APPLE)
- 시설위치 : 거창읍 거함대로 3372, 푸드종합센터 옆
- 시설규모 : 999.12㎡(1층 535.13㎡, 2층 463.99㎡), 철골구조

구 분	면적(㎡)	용 도	비 고
합계	999.12	-	철골구조
1층	535.13	사과제품전시장, 휴식공간, 사무실 등	1, 2층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일반음식점)
2층	463.99	휴식, 체험, 교육 공간, 옥외휴식공간 등	

- 수탁자 : 월천권역영농조합법인(대표 김정오)
 - 운영인력 : 8명(대표 1, 직원 7)
- 위탁기간 : 2023. 10. 18. ~ 2025. 12. 31. (2년 2개월)
- 위탁지원비용 : 46,697천원
 - ※ 2023년 : 20,000천원 / 2024년 : 26,697천원 / 2025년 : 지원금 없음
- 위탁내용 : 지애플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 세부사업 : 사과관련 가공(음료·빵·식사), 판매, 체험 운영 등
- 운영실적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6월)
	영끌팜 (2023. 2. 9.~8. 20)	월천권역 (2023. 10. 26 ~ 12. 31)	월천권역	월천권역
매출액(천원) *부가세 제외	207,037	45,578	497,291	348,017
방문객(명)	20,000	5,693	57,013	38,588

- 세부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3. 10.~12.	2024. 1.~12.	비 고
매 출 액 (A)	542,869	45,578	497,291	부가세 제외
매 출 원 가 (B)	546,915	62,929	483,986	
위탁지원금(C)	46,697	20,000	26,697	
매출이익(A-B+C)	42,651	2,649	40,002	세무사 발행 재무재표기준

□ 심의개요

- 일 시 : 2025. 8. 6.(수)
- 장 소 : 미래농업복합교육관 2층 소교육장
- 심의안건 : 지애플 민간위탁 재계약(기간연장) 적정성 심사
 - 위탁연장대상 : 월천권역영농조합법인(대표 김정오)
 - 기 위탁기간 : 2023. 10. 18. ~ 2025. 12. 31.
 - 재계약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조건
 - 가. 위탁운영 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
 - 나. 운영 초과수익 발생 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며, 배분율 등 세부사항은 위탁기간 종료 후 심의 후 결정함
 - 다. 기타 종전과 계약내용 동일
- 심의위원 : 7명

구 분	성 명	소 속	직 급	비 고
1	김 규 태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2	이 창 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	
3	신 미 정	거창군의회	군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4	김 우 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사과연구소	소장	
5	조 철 효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6	정 순 경	창원문성대학교	교수	
7	유 영 재	해플스팜사이더리	대표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월천권역영농조합법인(대표 김정오)의 지애플 민간위탁 재계약(기간연장) 적정함
- 평가점수 : 84.6점(정량평가 25점 + 정성평가 59.6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의회 동의)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 (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제9조(협약체결 등)

-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복합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등
 2.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3. 융복합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군수가 융복합센터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미래농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타조례개정 2025.5.7.)
1. 거창사과 생산·유통·가공·출하 관련기관·생산자단체의 대표자
 2. 사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융복합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8. 2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8. 22.

2. 제안이유

- 가.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과 수형별 재배 교육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민간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함.
- 나.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 세부내용 [붙임3]

연번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시설내용	비 고
		소재지	면적(m ²)		
합계			45,356.2		
1	토지	고제면 봉계리 525-1	19,874	사과원	
2		고제면 봉계리 521	1,379	사과원	
3		고제면 봉계리 522	1,534	사과원	
4		고제면 봉계리 525-3	358	창고용지	
5		고제면 봉계리 524-2	2,321	자연학습장	
6		고제면 봉계리 산 157-6	17,183	산나물체험장	
7		고제면 봉계리 520	251	산나물체험장	
8		고제면 봉계리 526-2	2,188	생태소류지	
9	건물	고제면 봉계리 525-2	207	관리동	
10		고제면 봉계리 525-3	61.2	창고	내부 저온창고 10m ²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대상 업무

- 위탁 재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사과 다축과원 조성 및 시범포 운영 등

2) 위탁기간 : 2021. 5. 31. ~ 2025. 12. 31.(4년 7개월)

3) 재계약 기간 : 2026. 1. 1. ~ 2030. 12. 31.(5년)

4) 재계약 기준

- 수탁자의 적정성, 전문성 및 운영능력 등을 고려
- 자체평가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평가

다. 추진경과

1) 2021. 5. 31. ~ 2025. 12. 31. : 고제면 주민자치회 위탁 운영

2) 2021. ~ 2024. :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연 1회)

3) 2022. ~ 2024. : 다축과원 조성(1.35ha) ※ 후지(2축) 0.6ha,
감홍(구요) 0.75ha

4) 2025. 8. : 민간위탁사무 자체평가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평가

－ 평가점수 : 80.75점(정량평가 24.75점 + 정성평가 56점)

※ 심의결과 : 재계약 적정함 원안 가결

라. 향후 추진일정

1) 2025. 10. ~ 12. 계약절차 진행

2) 2026. 1. ~ : 위탁업무 개시

4. 참고사항

가. 추진계획 : [붙임1]

나.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2]

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과 : [붙임4]

라. 관계법령 : [붙임5]

1)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조, 제22조, 제23조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위·수탁 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현 수탁자인 고제면 주민자치회에 재계약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재계약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은 없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대부료 기준에 의거 연간 200만 원 내외의 임대료와 위탁대상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수탁자가 다축 과원 조성비용의 20%를 자부담하고 다축과원 시범포 운영, 과원 운영, 시설 유지관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과 과원은 조성 후 결실까지 묘목에 따라 최소 2년~5년이 소요 되므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소득없이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의에서 적정한 것으로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계약을 통해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과 수형별 재배 교육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현 수탁자가 보조사업 조성비용의 20%를 자부담하여 다축과원을 추진한 바 사과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재계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고제면 지역공동체의 주체인 주민자치회가 수탁하여 다축 과원 시범포를 운영함으로써 사과주산지인 고제에 다축과원 보급을 확산하고 지역 내에 있는 시설을 지역공동체에서 지역의 자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도 크다 할 것임.

1 근거법령

-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운영위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군의회 동의),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22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제23조(성과평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지도감독보고)

2 위탁운영 현황

- 시설명 : 거창사과테마파크(고제 봉계) 교육장
- 시설위치 : 고제면 봉계리 525-1 일원
- 시설규모 : 45,356.2㎡(관리동 207.36㎡, 창고 61.2㎡)

연번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시설내용	비 고
		소재지	지목	면적(㎡)		
합계				45,356.2		
1	토지	고제면 봉계리 525-1	과	19,874	사과원	
2		고제면 봉계리 521	전	1,379	사과원	
3		고제면 봉계리 522	전	1,534	사과원	
4		고제면 봉계리 525-3	창	358	창고용지	
5		고제면 봉계리 524-2	답	2,321	자연학습장	
6		고제면 봉계리 산 157-6	임	17,183	산나물체험장	
7		고제면 봉계리 520	임	251	산나물체험장	
8		고제면 봉계리 526-2	유	2,188	생태소류지	
9	건물	고제면 봉계리 525-2	원	207	관리동	
10		고제면 봉계리 525-3	창	61.2	창고	내부 저온창고 10㎡

※ 파크골프장 :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고제면으로 이관하여 관리

- 수탁자 : 고제면 주민자치회(대표 채한식)
- 위탁기간 : 2021. 5. 31. ~ 2025. 12. 31.(4년 7개월)
- 위탁내용 : 다축과원 조성·시범포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등
- 운영인력 : 5명(회장 1, 회원 4)

3 추진계획

- 2025. 12. 31. 위탁기간 만료로 관련법령에 의거 1회 연장 가능(5년)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운영위탁)

- ④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부서검토(안)

검 토 항 목	부 서 의 건
위탁기간 연장	○ 2021~2024년 다축과원 1.35ha 조성 - 후지 2축 0.6ha(2022년 식재), 감홍 구요 0.75ha(2024년 식재) ○ 기존 다축과원 갱신으로 인한 안정적 운영과 성과 창출을 위해 연장계약 필요 ○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4 성과평가 세부계획

- 기 간 : 2025. 8. 11.(월) ~ 8. 12.(화) / 2일간
- 장 소 :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 평 가 자 : 2명(과수담당주사, 담당자)
- 평가내용

가. 평가범위 : 2025. 1. 1. ~ 2025. 7. 31.

※ 2021년~2024년 : 매년 1회 성과평가 실시

나. 평가항목

-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및 성과목표의 적정성
- 인력배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
- 위탁시설 관리 및 내·외부 위생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지도·감독·감사 병행 실시(붙임2 평가표)

다.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라 서류 및 현장 평가, 의견청취 등

5 재계약 적정성 심의

- 일 시 : 2025. 8. 20.(수)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본관 소회의실
- 심의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 등 6명
- 심의방법 : 발표평가에 의한 정성평가
- 평가내용
 - 대상기간 : 2021. 5. ~ 2025. 8.
 - 세부내용 :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6 향후계획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가능

-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실시 : 2025. 8. 11. ~ 12.
- 성과평가결과보고 및 홈페이지 게시 : 2025. 8. 13.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개최 : 2025. 8. 18. ~ 20.
- 의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제출, 의결 : 2025. 8. ~ 9.
- 민간위탁 재계약 : 2025. 10. ~ 12.

7 기대효과

- 사과 다축과원 수형별 교육장 활용으로 관내 농가 보급률 확대
- 다축과원 농가 인지도 향상 및 농가 확대 보급 기여

거창사과테마파크 고제 교육장 안내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붙임3

위탁 세부현황

- 위탁기간 : 2021. 5. 31. ~ 2025. 12. 31.
- 위탁자 : 고제면주민자치회(대표 : 채한식)
- 운영인력 : 5명

다축과원 시범포 조성 운영			공원 및 시설물 관리		
총괄관리자	채한식	회장	총괄관리자	채한식	회장
관리자	홍석민	간사	관리자	김동영	회원
	김민경	총무		하선기	회원

- 임대료 : 연간 2백만원 내외 / 공유재산법 대부료 기준
- 위탁조건
 - 사과 다축 과원 조성·운영이 가능한 자
 - 위탁대상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원칙이며 아래 항목에 의거하여 수행

구분	수탁자	거창군
내용	● 다축과원 조성 - 전체 사과 과원 갱신('24년까지 순차적 갱신) - 과원 조성비용 20% 부담 ● 다축과원 시범포 운영('22. 5. ~ '25. 12.) - 농가 현장 견학 및 교육 - 운영결과 보고(매년 12월 사용료 정산시) ● 과원운영(사과) - 사과 과원 경영 계획 수립 ● 시설 유지 관리 - 제조작업 등 공원시설 및 부속건물 관리 - 공원시설, 건물 등 목적 외 사용금지	● 다축과원 및 시범포 운영 - 과원조성 현장 점검 - 시범포 운영 만족도 조사 ● 과원운영 - 농가 현장 견학 및 교육계획 수립 - 사과 과원 운영 현장 점검 ● 시설 유지 관리 - 공원시설, 건물 등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 100만원을 초과하는 개보수 공사비 지원

- 과원의 생산량 보전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재해보험비 수탁자 부담)
- 위탁재산 공제회비 납부(공제회비 수탁자 부담)
- 시설의 개·보수비 중 우리 군에서 심사 결정한 비용 지원
- 수탁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준수
- 선정된 수탁자는 거창군이 제시하는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

○ 그간 위탁운영 현황

운영기간	수탁자	범위	재정운영현황(원)		
			년도	소득	임대료
‘09년 ~‘11년	생명두레문화교육원 (대표 한대수)	전체과원위탁	2009	무	없음
			2010	무	없음
			2011	무	6,600,000
‘12년 ~‘14년	생명두레문화교육원 (대표 한대수)	사과·오미자과원 부분관리위탁	2012	23,279,047	7,000,000
			2013	24,827,873	7,450,000
			2014	19,849,830	5,950,000
‘15년 ~‘17년	베짱이영농조합법인 (대표 오승철)	전체관리위탁	2015	34,833,950	10,450,000
			2016	31,449,133	9,434,740
			2017	78,314,794	10,964,070
‘18년 ~‘20년	베짱이영농조합법인 (대표 오승철)	전체관리위탁	2018	61,732,240	8,642,510
			2019	93,807,698	13,133,070
‘20년	베짱이영농조합법인	홍로과원 위탁	2020	11,576,700	1,620,730
	(주)거창한파머스농업법인	홍로과원을 제외한 전체관리 위탁		25,355,088	3,549,710
‘21년	고제면주민자치회 (대표 채한식)	전체관리 위탁	2021	5,288,300	1,219,000
‘22년			2022	무	2,102,900
‘23년			2023	무	1,951,190
‘24년			2024	무	1,914,198

붙임4**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재계약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과****□ 심의개요**

- 일 시 : 2025. 8. 20.(수) 16:00 ~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본관 소회의실
- 심의안건 :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사
 - 위탁연장대상 : 고제면 주민자치회(대표 채한식)
 - 기 위탁기간 : 2021. 5. 31. ~ 2025. 12. 31.
 - 재계약기간 : 2026. 1. 1. ~ 2030. 12. 31.(5년)
 - 위탁조건
 - 가. 위탁운영 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
 - 나. 기타 종전과 계약내용 동일
- 심의위원 : 7명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계			7명	
1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소 장	김규태	당연직
2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당연직
3	거창군의회	군 의 원	신재화	군의회 추천
4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사과연구소	소 장	김우일	
5	사과발전협의회	회 장	정창현	
6	거창사과실무추진단	실 무 위 원	이응범	
7	거창군농업기술센터	과수 전문위원	신을성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고제면 주민자치회(대표 채한식)의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함
- 평가점수 : 80.75점(정량평가 24.75점 + 정성평가 56점)

□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운영위탁)

- ①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운영위탁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사과테마파크를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수익이 발생하는 체험시설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되, 재해 발생 시에는 사용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 ⑦ 수탁자는 매년 12월말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되, 사용료의 납부 및 경감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른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군의회 동의)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 (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제23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지도·감독·보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8. 2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8. 22.

2. 제안이유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2025.12.31.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도력과 선수육성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우수선수 발굴과 학교 간의 연계, 학교의 자율적 관리를 통한 거창군 전략종목을 육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업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 나. 위탁내용
 - 1) 엘리트운동부 대회참가비, 훈련비, 인건비 등 지원
 - 2) 대상종목
 - 배드민턴 : 3개교(창남초, 거창중, 거창승강기교)

- 역 도 : 2개교(대성중, 대성일고)
 - 사 격 : 6개교(혜성여중, 거창여중, 대성중, 거창중, 아림고, 중양고)
 - 육 상 : 4개교(거창중, 거창여중, 아림고, 거창대)
 - 축 구 : U-18 축구팀 2개교(중양고, 대성일고)
- ※ 지원 종목은 학교 운동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 다.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간)
-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4. 추진일정

- 가. 거창군 의회 일반의안 제출 : 2025. 8.
- 나. 거창군 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5. 9.
- 다.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실시 : 2025. 9.
- 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5. 10.
- 마. 민간위탁 계약체결 및 공증 : 2025. 12.

5. 참고사항

- 가.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1
- 나. 관계법령 : 붙임2
 - 1)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8조(경비의 지원)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등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위·수탁 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현 수탁자인 사단법인 거창군체육회와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은 계속해서 거창군체육회가 수탁하여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거창군 체육회와 수의계약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체육회는 선수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는 점
 - 나. 거창군체육회는 전문적인 지도력과 선수육성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코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
 - 다. 거창군체육회는 코치에 대한 인력관리 및 대회참가, 훈련비정산관리를 하는 전문 행정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점

라. 엘리트 육성 종목은 모두 거창군체육회의 정회원단체로 가입이 되어 있어 초,공,고 선수발굴 및 육성에 있어 밀접한 관계가 필요한 점

마. 현재 엘리트운동부 선수들은 모두 도민체전 고등부에서 활약하고 있고, 전국단위 대회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어 거창군 체육회에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점 등에 있어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인정이 됨.

- 다만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제출된 점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규정을 어긴 사항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 수탁업체인 거창군체육회와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가 동의안을 심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보이는 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없이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임.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기간(2025.12.31.)이 만료됨에 따라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함

I

추진근거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8조(경비의 지원)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등

II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 위탁사무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대회참가비, 훈련비, 인건비 등)
 - 배드민턴 : 3개교(창남초, 거창중, 거창승강기고)
 - 역 도 : 2개교(대성중, 대성일고)
 - 사 격 : 6개교(혜성여중, 거창여중, 대성중, 거창중, 아림고, 중앙고)
 - 육 상 : 4개교(거창중, 거창여중, 아림고, 거창대)
 - 축 구 : U-18 축구팀 2개교(중앙고, 대성일고)
- ※ 지원 종목 및 학교는 운동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간)
- 위탁예산 : 매년 400백만원 정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적절성 검토결과
 - 체육훈련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 적절함

○ 현 위탁현황

- 위탁기관 : 사단법인 거창군체육회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 예산지원액

(단위:천원)

구 분	2023	2024	2025
예산액	330,000	360,000	398,472

Ⅲ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5. 8.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5. 9.
-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 : 2025. 9.
-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5. 10.
 - 구성인원 : 6~9명(위원장 포함)
 - 위원구성 : 부군수, 관련공무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부교수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 임 기 : 심의 후 자동해산(비상설기구)
- 민간위탁 계약체결 및 공증 : 2025. 12.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14.12.31., 2021. 4. 28.)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10.)

1.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2.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3.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5.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
 8. 전문체육 활동 지원
 9.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10.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 지원(2023.11.29.)
 11.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호신설 2025.7.9.)
- ③ 제2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항신설2015.12.10.)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제8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9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8. 2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8. 22.

2. 제안이유

-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계약이 2025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위·수탁계약 절차를 이행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관리 운영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다. 시설물 현황

계	테니스장		부대시설		
	인조잔디코트	하드코트	관리사무소	조명시설	웬스시설
12면	6면 (전천후)	6면 (옥외)	1층 140.55m ²	타워조명 실내투광등	7,829m ²



라. 위탁기간 : 2026. 1. 1.~ 2028. 12. 31.(3년)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바. 수탁자격 : 경기단체, 체육단체 또는 개인

4. 추진일정

- 가. 군 의회 동의안 제출 : 2025년 8월
- 나. 수탁자 선정 관련 공개모집 : 2025년 10월
- 다. 심의위원회 개최 : 2025년 11월
- 라. 위수탁계약 체결 : 2025년 12월
- 마. 위탁계약 운영 : 2026년 1월 ~

5.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 붙임1

나. 관계법령 : 붙임2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 (관리위탁)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위·수탁 계약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하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수탁자격은 경기단체, 체육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 위탁료는 현재 용역을 통해 산정기로 계획되어 있음.
-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은 현재 거창군테니스협회에서 수탁받아 운영하여 왔으며 그간 민간위탁 운영으로 인해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투명성도 확보되는 만큼 본 동의안은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의 위탁기간 만료(2025.12.31.) 도래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함.

I**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3조

II**추진배경**

-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거창군 테니스 진흥 및 활성화 효과 증진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생활체육 시설 저변에 기여하고자 함.

III**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투명성 확보
-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
- 공정한 심사를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결정

IV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2028. 12. 31.(3년)

☐ 위탁현황

○ 대 상 :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 시설물 현황

계	테니스장		부대시설		
	인조잔디코트	하드코트	관리사무소	조명시설	펜스시설
12면	6면 (전천후)	6면 (옥외)	1층 140.55㎡	타워조명 살내투광등	7,829㎡

☐ 현 수탁자 현황

수탁자	주소	기간	비고
거창군 테니스협회	-	2023.01.01. ~ 2025.12.31.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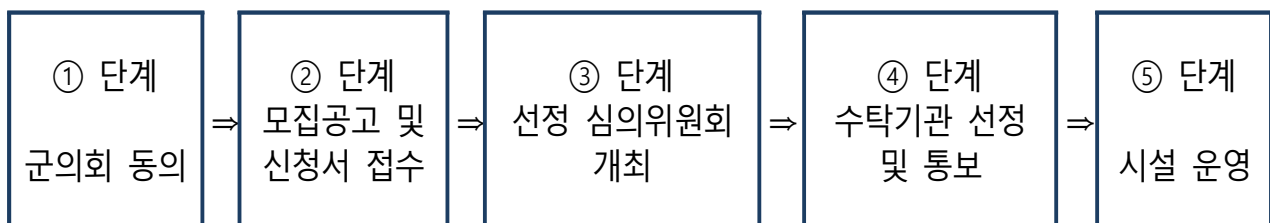
○ 위탁 및 사용료 : 위탁료 2,500천원(년간)

☐ 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2025.12.31.) 도래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위탁내용 : 테니스장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 위탁 추진절차



V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자치사무에 대한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5. 8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5. 10. 1. ~ 15.(15일간)
- 접수기간 : 2025. 10. 15. ~ 25.(10일간)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관내 일간신문 등
- 공고내용 : 대상시설, 위탁기간, 신청자격, 구비서류, 선정방법 등
- 신청자격
 - 생활체육 지도자 3급(경기지도자 3급이상, 유사자격증)이상 소지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도민체육대회에 우리군 대표 선수단으로 출전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기단체, 체육단체, 개인
- 위탁사무 : 테니스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 이내(위원장 포함)
- 위원구성 : 관련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지명
- 심의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5. 11월 중
- 장 소 : 체육시설사업소 회의실
- 심의위원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 심의방법 : 서류심사, 사업계획 설명(PPT), 질의응답

○ 심사기준

항목(7개부분)	점수(100점)	심사내용(13개항목)
1. 사업계획 적정성	10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발전방향 - 운영 및 관리계획의 합리성
2. 재정운영 계획	10	- 수지분석, 수입증대 방안 등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방안 등
3. 조직 및 인력운영	25	- 조직 구성 및 인력배치 - 시설관리 능력 확보 및 운영
4. 시설운영 활성화	20	- 홍보 및 마케팅 전략 - 타 기관 시설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대회 및 행사 등 기회운영 능력
5. 이용자 안전관리	10	- 이용자 안전대책 및 방지 방안 등
6. 지역사회와의 협력	20	- 지역사회 교류 및 공헌 방안 -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7. 위탁자 보유자산	5	- 운영비 담보 능력 등

○ 선정방법

- 위탁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자의 PPT설명을 듣고 심사기준표에 의거 위원들이 심사
- 심사기준표에 의한 위원별 점수 합산 후 평균점수 6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결정

* 공개모집 신청자 단독일 경우 또는 심사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위탁계약 체결 : 2025. 12월 중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계약방법 :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

VI 행정사항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5. 8월
- 공개모집 : 2025. 10월
- 심사위원회심사 선정 : 2025. 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5. 12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2022.11.30.)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2022.11.30.)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제19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2.11.30.)

제24조(대부료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제8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군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9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협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탁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체육시설 위탁·위임)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조전부 개정 2018.10.31. 향삭제등개정 2022.4.1.)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 위탁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위치, 시설내역,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4.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증명서류

가.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나.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 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8. 2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8. 22.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① 유기농복합단지 건립(건물의 신축)

1. 제안이유

- 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 가공 . 유통 . 판매 복합시설 조성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의 장 마련
- 나. 연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거창창포원 일원에 조성하여 대표관광지 먹거리 인프라를 보완하고 친환경 농식품 판로 극대화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 2)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71번지 일원
- 3) 사업기간 : 2022년 ~ 2027년(6년간)
- 4) 사 업 량 : 대지면적 13,063.6㎡, 연면적 3,558.26㎡

- 5)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레스토랑, 카페, 판매장, 가공장, 체험시설 등 조성
 6) 사 업 비 : 18,000백만원 (국 9,000, 도 2,700, 군 6,300)

나. 취득재산 내역

(단위:㎡,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형식)	연면적				
취득 (신축)	건물	남상면 월평리 2271번지 일원	건물 1동	3,558.26	14,492,580	2027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	거창군

※ 주요시설

구 분	용 도	연면적(㎡)	비고
계		3,558.26	
유기농 레스토랑	제2종근린생활시설	447.11	
유기농 카페	제2종근린생활시설	520.37	
유기농 가공실 및 가공체험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291.16	
친환경 농식품 판매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384.40	
씨앗도서관	제1종근린생활시설	93.70	
유기농 식문화 교육장/진로체험교실	제1종근린생활시설	267.33	
사무실/회의실/창업활성화센터	제1종근린생활시설	168.32	
회 랑	-	779.03	
공용 및 기타	-	606.84	

다. 추진경과

- 1) 2020. 11. : 사업부지 공유재산 심의
- 2) 2021. 4. : 거창군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원안 의결)
- 3) 2022. 3. : 공모사업 선정
- 4) 2022. 7. :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조건부 2단계)
- 5) 2022. 11. : 거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6) 2023. 8. :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7) 2023. 10. : 기본계획 농식품부 승인
- 8) 2024. 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통보(경남 공공건축지원센터)
- 9) 2024. 7. : 거창군 공공건축심의 완료
- 10) 2024. 10. : 설계용역 착수
- 11) 2025. 3. : 설계용역 중간설계 완료
- 12) 2025. 4. : 제로에너지예비인증 완료
- 13) 2025. 5. : 녹색건축예비인증 완료
- 14) 2025. 5. : 건축허가 신청(거창군 도시건축과)
- 15) 2025. 6. : 실시설계 및 운영방안 용역 합동보고회
- 16) 2025. 7. : 설계경제성(VE) 검토 완료

라. 향후계획

- 1) 2025. 8.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열람 의견청취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 2025. 8.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완료
- 3) 2025. 9. 2. ~ 9. 10.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의회 의견 청취
- 4) 2025. 10. :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 5) 2025. 10. : 군계획위원회 개최
- 6) 2025. 11. : 경남도 관련부서 협의(농정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 7) 2025. 12.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8) 2026. 1. : 거창군 건축협의 완료
- 9) 2026. 3. :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 10) 2026. 6. : 공사 착공
- 11) 2027. 12. : 공사 준공

마. 기대효과

- 1) 친환경농업과 생태관광의 상생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 소득 제고
- 2) 거창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가

3. 관계법령 : [붙임3] 참조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1] 참조

5. 사업비 내역 : [붙임2] 참조

② 하성단노을마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민 4도3촌 체류시설 조성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신규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하성단노을마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민의 4도3촌 라이프 확산과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여가·영농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체류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위 치 : 웅양면 한기리 915번지 등 6필지
※ 한기리 452-3, 915, 915-2, 923-1, 923-13, 1043-4
- 2) 사업기간 : 2025. 6. ~ 2027. 12. / 3년간
- 3) 대상지 면적 : 14,562㎡(정비면적 : 9,603.9㎡)
- 4) 사업내용 : 체류시설 총18호 조성(16호: 각호 면적 33㎡, 2호: 각호 면적 40㎡)
공동시설 리모델링, 부대시설 조성 등
- 5)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 1,500, 도 450, 군 1,050)

※ 예산배정 : 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

6) 주요내용 : 도시민의 농촌 체류·영농체험 시설조성

나. 취득재산 내역

(단위:m²,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1)기준가격	취득 시기	사업내용	비고
		소재지	지목 (형식)	면적				
취득	건축물	웅양면 한거리 915	건물 18동	608	2,129,700	2026 ~ 2027	단독주택 18호 신축 (33m ² 16호, 40m ² 2호)	신축

※ 1)기준가격 : 33m²(115,931천원/호), 40m²(137,400천원/호)

다. 추진경과

- 1) '25. 3. :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 공모 선정
- 2) '25. 5. : 국비(150백만원)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 3) '25. 6. : 기본계획 수립 착수

라. 향후계획

- 1) '25. 8. : 공유재산 심의
- 2) '25. 8. ~ 11. :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 3) '26. 3. ~ '27. 11. :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1) 체류시설 조성을 통해 우리군 생활·관계인구 유입 촉진을 통한 지역
활력 증대 및 경제활성화
- 2) 도시민에게 농촌 체류 및 영농체험 기회 제공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 도모

3. 관계법령 : [붙임3] 참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 [붙임1] 참조

5. 사업비 내역 : [붙임2] 참조

3. 검토의견

① 유기농복합단지 건립(건물의 신축) 건은

○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거창군이 선정되어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71번지 일원에 180억원의 사업비로 유기농 복합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군의회의 의결 대상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유기농복합단지는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복합시설 구성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연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거창창포원 일원에 창포원과 연계하여 조성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홍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위한 우수한 입지로 보이며 또한 거창창포원에 부족한 먹거리 인프라도 확충될 것으로 사료됨.
- 계획된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유기농 레스토랑, 유기농 카페, 유기농가공실 및 가공체험장, 친환경 농식품 판매장, 씨앗도서관, 유기농 식문화 교육장/진로체험교실, 사무실/회의실/창업활성화센터, 회랑, 공용 및 기타시설로 되어 있으며
-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조건부 2단계) 중이며 조건부 사항은 인접한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과의 차별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 두 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상호간 보완하는 내용으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비는 18,000백만원(국 9,000, 도 2,700, 군 6,300)으로 현재 연차별 배정계획에 의해 확보중이며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예산확보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거창창포원은 하천부지로 인프라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유기농복합단지 건립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두 사업의 연계시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현 부지 외에는 창포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없고 유기농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입지여건으로도 우수하다고 판단되므로 유기농복합단지의 건립은 타당하다 할 것임.

② 하성단노을마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민 4도3촌 체류시설 조성의 건은

-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체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2025년 3월 선정되어 3,000백만원(국 1,500, 도 450, 군 1,050)의 사업비로 추진 하는 사업으로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군의회의 의결 대상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체류시설 총18호의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 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 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여 농촌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임.
- 본 공모사업은 하성단노을영농조합의 건의로 시작되었고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센터는 폐교된 하성초등학교를 주민 스스로 정부의 문화지원사업으로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하였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될만큼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업입지로서는 적합하다고 판단됨.
- 농촌생활을 꿈꾸는 귀농·귀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도시·농촌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도시민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이 사업은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계획 또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